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323호로 2021년 4월 8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제5조)
- 다. 의회의 동의 및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안 제6조~제7조)
-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안 제8조~제9조)
- 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위원 위촉 등(안 제10조~제11조)
- 바. 협약체결, 재계약 및 책임의 소재(안 제12조~제14조)
- 사.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안 제15조~제16조)

아.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안 제17조~제20조)

자. 사무편람 및 종합성과평가(안 제21조~제2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협 의: 관계부서(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2021. 4. 8 ~ 4. 13.):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행정 권한의 위임에 따른 민간 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 기관 선정에 관한 관련 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제224차 2020년 제1차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 중이며, 그 과정에서 현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서 대상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등 위탁 사전 적정성의 세부 기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회 동의 및 보고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신규 위탁시 사전 동의 뿐 아니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신설하고, 안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에 신규 위탁시 동의안과 재위탁시 보고 자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안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에는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까지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 시 부패요소의 사전 예방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 안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는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음.
- 안 제13조(재계약)에서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그 경우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의 감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였음. 이는 기존 조례의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던 것에서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9조(지도·감독 등)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게 해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였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2조(종합성과평가) 조문을 신설하여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를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였으며, 또한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재위탁 보고시 포함하게 하였음.
-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전부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재계약 도래 사무 등에 관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21년 9월 1일로 규정하였음.

## ○ 검토 결과

- 현대의 행정은 행정수요가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고 있으며 지역 문제 해결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 요구가 강해지는 등 행정과 민간의 협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민간위탁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같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례 증가에 대응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우리 의회의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문이 대폭 정비 및 신설되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자 선정, 사후평가까지 추진 단계별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이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



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

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